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의 원격강의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수업의 70% 이상을 원격(방송·통신)의 형태로 운영하는 수업을 말하며, 원격수업에는 온라인수업, 원격강의, 가상강의, 전자강의 등의 용어를 포함한다. 다만, 강의실 수업의 보조 수단(수업자료 탑재,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서 원격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원격병행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수업의 70% 미만을 원격의 형태로 운영하는 수업을 말한다.
3. “K-MOOC”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말한다.

제3조(학점인정) 1. 원격수업 교과목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총장의 승인하에 학부(과)의 특성에 따라 제한을 둘 수 있다.

2. 원격병행수업으로 취득한 학점은 모두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3. K-MOOC 이수 시 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이수증을 발급받은 재학생에 한하여 과목당 1학점, 재학기간 중 최대 3학점까지 교양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K-MOOC의 강좌는 1과목당 총 375분 이상으로 이루어진 교과목만 인정한다.

제4조(원격수업의 개설 및 운영) 1. 원격수업 교과목의 이수 단위는 일반적인 대면수업과 동일하게 평점 및 학점제를 기본으로 한다.

2. 원격수업의 학점 당 이수 시간은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3. 1차시 당 콘텐츠 진행(재생) 시간은 25분 이상(1학점 기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토론수업, 프로젝트 기반 원격수업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25분 미만으로 제작할 수 있다.
4. 콘텐츠 진행 시간을 포함한 1차시 총 학습 시간은 50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 본교에서 개발하여 개설할 수 있는 원격교육 교과목 수는 학기별 각 학부(과) 개설 교과목 학점 수의 20% 이내로 한다.
6. 원격교육 강의 콘텐츠는 개강 전 4주이상의 수업이 제작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강의 예정일 최소 4주 이전까지 강의 콘텐츠가 제작되어 있어야 한다.
7. K-MOOC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되, 학기별 최대 취득학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8. K-MOOC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기말 시험 1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소속 학부(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 1) K-MOOC 이수 학점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2) K-MOOC 이수증 원본 1부

제5조(시수인정 및 강사료)

1.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는 교과에 대해 교원의 시수로 인정한다.
2. 원격수업에 대한 강사료 발생 시 총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책정한다.

제6조(출석관리)

1. 원격수업은 1차시 당 재생시간이 80%이상 되어야 출석인정이 되며 이외의 출석인정 기준 및 결석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본교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출결처리는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등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3. 출결관리 시스템에서 대리출석 등 부정한 출석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제7조(평가관리)

1. 원격수업 이수에 대한 평가는 본교의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학생의 성적평가(중간고사, 기말고사 등)는 출석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3. 원격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 내에서 처리하며, 평가근거자료는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4. 원격평가를 실시한 이후 부정행위 및 대리시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응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과목의 학점을 취소한다.

제8조(원격수업관리위원회 구성)

1. 원격수업 콘텐츠의 품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원격수업의 콘텐츠는 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콘텐츠 수정여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 및 교수 등에게 유지·수정·보완·재제작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제2항에서 정한 조치 권고를 받은 부서 및 교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콘텐츠를 수정·보완·재제작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 방법)

1. 원격수업에 의한 교과목 운영 및 학점취득 등은 본교 원격강의시스템으로만 운영하여야 한다.
2. 원격수업 과목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부) 등에서는 교무처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콘텐츠 개발 및 지원)

1. 학교는 원격수업을 위한 원활한 콘텐츠 개발 및 제작을 위해 시설, 기자재, 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해 개발된 콘텐츠를 본교 원격수업 이외 K-MOOC 등에 다른 곳에 등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텐츠는 제9조에서 정한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4. 콘텐츠를 개발·제작하고자 하는 교원은 국내 저작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원격수업의 관리 및 운영)

1. 원격수업과 관련한 교과목의 개설 및 성적평가, 학사운영 등의 관리는 교무처에서 주관하며, 기타 사항은 본교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원격수업을 위한 웹사이트의 관리, 콘텐츠 관리, LMS 온라인 관리, 교수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한다.

제1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제정 2019. 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제7조3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